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87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김동아・이기헌・오세희

김 현 • 유동수 • 박홍배

박정현 • 이광희 • 김영배

이정문 • 허성무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 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
	<u>지 아니한 자</u>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